

Monthly Customs Newsletter



[대표관세사 인사말]

FTA와 관련한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뉴질랜드 FTA가 정식 서명을 했고, 한-중 FTA도 타결 이후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선 FTA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등의 각종 사업을 내놓고 있으며, 저희 관세법인 청우에서도 YES FTA 차이나센터 공익관세사로 금번에 위촉을 받아 일선 현장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 등을 위한 컨설팅을 적극 수행할 예정입니다.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벚꽃축제도 시작될텐데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용남



【 관세동향 】

▶ 우편물의 통관절차

질의 : 해외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 어떠한 통관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를 이용한 1차 세관검사를 거쳐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하고,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 과세대상과 세관 신고대상(간이통관 또는 일반 수입통관)으로 구분합니다.

현장 과세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 허용범위 이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인보이스, 영수증 등)가 있는 것으로서, 세금을 부과해 수취인에게 배달하며, 부과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 세관 신고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해, 간이신고 또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 선물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과 우편요금 등을 합한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회사물품 및 상용물품 등(단, 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구매한 물품으로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송품장 등 가격자료, 가격신고서, 요건확인서(통합공고 대상)가 필요합니다. 관세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이용 문의는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일반 수입신고 대상 외의 우편물은 간이신고 대상이며, 방문, 팩스, 이메일, 모바일(m.customs.go.kr) 등을 통해 우편물 간이통관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간이통관신청서,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자료, 재수입물품은 수출신고필증 원본 또는 수출증빙서류와 수리내역서(수리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관세동향 】

▶ 2015 세계시장, 이렇게 진출하라!

KOTRA는 우리 기업의 권역별 시장진출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0대 권역별 시장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83개국 123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10대 권역별 핵심 이슈, ▲진출환경, ▲시장분석, ▲경쟁국 및 우리 기업 진출동향, ▲시장진출 전략 등을 수록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내수회복에 힘입어 경기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주택경기 회복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비지출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KOTRA는 우리 기업이 소수 인종(히스패닉, 아시아계)의 구매력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성숙 시장임을 고려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중국은 최근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추세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시행하는 등 자국 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심각한 생산과잉 해결을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기업은 한·중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중·일 관계 악화에 따른 반사이득을 취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당분간 엔화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기업에는 일본 글로벌 기업의 현지 거점에서 직접 납품해 환율변동에 영향이 적은 수출구조를 갖추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림픽 특수에 따른 건설 기자재 분야 활성화,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제품 수요 증가 등은 엔저 속에서도 우리 기업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ASEAN 경제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동남아시아, 생산 거점으로서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서남아시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산업설비 건설을 늘리고 있는 중동시장 등에 대한 정보와 진출 전략도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OTRA 윤원석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에 제시한 10대 권역별 진출 전략이 현장정보에 목마른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KOTRA 해외시장 정보 포털인 '글로벌 윈도우(www.globalwindow.org) > 자료실 > 지역·국별 진출전략'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관세동향 】

▶ 니코틴 원액 밀수입자, 서울세관에 덜미

서울세관은 니코틴 원액을 밀수입한 재미교포 S 씨 등 2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S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용 향(mixed fruit flavor)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미국으로부터 83만 2,000mℓ의 니코틴 원액(시가 5억 5,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한 니코틴 원액은 서울시 불광동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밀수입한 니코틴 원액은 2mℓ짜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제품 200만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유통 시에는 70억원 이상의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S 씨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용 향(mixed fruit flavor)'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수입통관 시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용 향과 같은 박스에 섞어 담아 수입했다. 이뿐 아니라 물품 도착 후 식별을 위해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용기에는 'sample', 전자담배용 향이 들어있는 용기에는 'SAMPLE'이라고 영문 대소문자로 구분해 표기했다.

서울세관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S 씨와 같은 방법으로 니코틴 원액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동종 물품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앞으로 전자담배 용품 수입 통관 시 검사를 강화하며,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동향 】

▶ 수입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정기 관세조사 면제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부담을 줄인다. 하지만 탈세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보면, 먼저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조사 기간도 20일에서 되도록 10일 이내로 축소해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특수관계를 이용한 탈세나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4대 고위험 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납세신고 관행을 정착하는 차원에서 기존과 같이 관세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납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명의 대여·차용, 무(無)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시작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업체에 충분히 사전안내를 하고 의견을 듣는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3단계 구제절차를 준수해 불량과세를 없애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제3의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과세 전 3단계 구제절차는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관세평가·품목분류 심의기구, 과세 전(前)적부심사위원회 등으로 과세처분 공정성, 납세자와의 이견 사안, 과제 적합성 등을 심의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탈세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철저히 대응해 국가 세수 확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동향 】

▶ 한·중 바닷길로 역직구 바람 불 듯

인천과 청도를 잇는 페리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해상간이통관 시스템'이 올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한·중 간 물류비용이 30% 이상 절감되고 역직구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간이통관 시스템이란 기존 복잡한 해상통관 시스템을 간소화해 온라인으로 주문-통관-택배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3월 19일 오후 5시 인천에서 청도로 출발하는 페리선에서 중국 소비자가 주문한 전자상거래 물품의 첫 선적이 이뤄졌고, 다음 날 오전 중국 청도본부세관 산하 대항세관 페리 접안 부두에 도착한 후 해당 물품은 X-ray 검사만으로 간이통관되고 바로 중국 내 택배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이번 시스템에 적용하는 페리 운송 방식은 항공 운송보다 시간이 하루 더 걸리지만, 최소 30% 이상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항공 특송으로 진행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지연이나 반송 등 예측하기 어려운 배송사고가 많은 편이지만, 간이통관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의 주문내역과 실제 제품이 일치하기만 하면 100%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직구와 역직구 등 쌍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으로, 한·중 전자상거래 기업 모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역직구 활성화에 목마른 우리 기업에는 중국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참고로 간이통관 시스템은 지난해 초 KOTRA 칭다오무역관이 청도시정부, 청도세관 등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지난해 8월 무역투자확대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KOTRA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원 GLS, 전자상거래 기업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최근 한·중 FTA를 가서명하면서 이번 시스템 도입도 탄력을 받았다.



【 관세동향 】

▶ 항공 수입화물, 국내 포워더도 적하목록 수정 가능

적하목록 품명정보는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 입항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안전 및 위험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적하목록 품명 오류와 과태료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적하목록 정확도 향상을 통한 업계와 세관의 과태료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하목록 품명 정확도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먼저 국내 포워더에게 적하목록 정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즉 항공 수입화물의 경우 항공사가 적하목록 제출 이전 단계에서 국내 포워더에게 혼재화물에 대한 사전 오류 수정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항공 수출화물과 해상 수입화물은 이미 국내 포워더가 적하목록을 정정할 권한이 있다.

다만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전산환경(인프라) 및 데이터 입력수준(정확성) 등을 고려해 품명 오류 항목에 한해 정정을 허용한다. 하기장소 신청서 항목에 품명란을 추가해 국내 포워더가 품명을 정정하는 것만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포워더가 품명을 의미 없는 'AA'로 전송해 국내 포워더가 하기장소 신청서에서 해당 품명을 'Television'으로 정정할 경우 국내 포워더의 신청 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숫자와 영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명확히 했다. 숫자와 영문자에 대한 품명오류 기준 중 모델·규격명 및 업계에서 통용하는 제품 약어의 경우 적하목록과 상업서류(송장 등) 또는 수출신고필증의 품명이 일치하는 모델·규격(KJ993PKI2 = 신발)과 제품 약어(ACC = ACCESSORY, KYBD = KEYBOARD)에 한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한 품명에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 오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돼 적하목록이 제출되면 중계사업자 시스템에서 전산오류를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하목록 품명오류 기준에 해당하는 건은 원칙적으로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입물품선별시스템(C/S)에서 검사대상이 된다. 다만 검사대상 선별 건이 관련 서류에 따라 오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관리대상화물 선별 해제 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특송물품은 통관단계에서 100% X-ray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대상화물 선별에서 제외한다.

이번 지침은 4월 1일부터 적용하지만, 중계사업자 전산 오류 통보와 관리대상 화물 관련 개선방안은 시스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FTA 뉴스]

▶ 한·터키, 경제협력 관계의 새로운 도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6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이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하는데,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은 2013년 5월 1일 우선 발효했다. 양국은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서비스 및 투자협정을 '실질 타결'했으며, 같은 해 9월 18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한·터키 FTA 기본협정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을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을 정식 서명함에 따라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에만 국한한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터키가 자국 관련 FTA에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함으로써 터키에 진출한 우리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가 FTA에 따른 특혜를 얻을 기회가 주어졌다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산업부는 2013년 5월 상품협정 발효 후 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로, 이번에 협정이 발효하면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증명하듯 FTA 발효 전 3년간 양국 교역 증가율은 연간 19% 수준이었으나, 상품협정 발효 후 1년간인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양국 교역 증가율은 33%를 기록해 교역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 발효 후 10년간 GDP는 0.01%,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6,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건설 서비스(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여가 문화 서비스(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 등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준 이상의 시장 개방을 약속한 분야에서 교역 확대를 기대했다. 이뿐 아니라 터키가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 관점에서의 요지로 우리 기업이 아중동지역 진출에 필요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이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제 효과를 조속히 누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TA 뉴스]

▶ 정부, '한·중 FTA 활용과 경쟁력 강화 방향' 발표

정부가 2월 25일 가성명한 한·중 FTA와 관련해 '한·중 FTA 활용과 경쟁력 강화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발표가 한·중 FTA 타결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응방향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한·중 FTA 활용대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국내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서명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구체적 재정계획 수립까지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한·중 FTA 비준은 물론, 이에 따른 경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부는 한·중 FTA에 따른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3월까지 차이나데스크(China Desk)를 한국무역협회에 설치해 중국 시장정보 제공은 물론, FTA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 개척, 비관세장벽 해결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중 FTA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선정해 원산지 관리와 시장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 보급한다. 아울러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YES-FTA 차이나 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 100일 특별 지원대책'도 준비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통관과 시험·인증 등 비관세장벽에 따른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를 위해 세관 간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정부(중앙·성 단위) 내 우리 기업 애로 해결 담당 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FTA 플랫폼을 활용해 주요 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문화콘텐츠와 환경 등 한·중 FTA를 통해 추가 개방한 중국 서비스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본격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제조업 혁신 3.0 추진 및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 등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TA 뉴스]

▶ **복잡한 FTA? 관세청 컨설팅 지원 받아보세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YES FTA 컨설팅 사업'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2015년도 YES FTA 정부 예산지원 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고, 3월부터 'YES FTA 컨설팅 사업' 대상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이 컨설팅 사업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세관 등 6개 권역별 세관에서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이 'FTA 활용 종합 컨설팅'(최대 400만원),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최대 200만원),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최대 200만원)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원 신청은 관할 지역 세관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올해도 지난해 'YES FTA 컨설팅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아직 FTA를 활용하지 못한 중소 수출기업 및 영세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에 대비해 對중 수출기업도 상시 발굴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결과, 지난해에는 574개 참여기업 중 570개 업체(99%)가 컨설팅을 받은 후 즉시 FTA를 활용했고, 그중 180개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는 등 컨설팅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TA 뉴스]

▶ 관세청, 中企 FTA 활용지원 위해 공익관세사 운영

주요 공단 등 산업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무보수로 FTA 컨설팅을 해주는 공익관세사를 운영한다. 이들은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YES FTA 차이나센터'에 상시 배치돼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공익관세사를 3월 16일부터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에 본격 배치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중 FTA가 본격화하면서 기존 세관인력만으로는 주요 공단, 농공단지 등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어려워 이 같은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 세관이 연결돼 배치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 개선사항 발굴·건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경인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YES FTA센터' 운영에 참여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찾아가는 YES FTA센터'는 버스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찾아가 컨설팅해주는 사업으로, 3월에는 수도권 지역, 4월 충청 지역, 5월 강원 지역 등 전국을 순회하며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FTA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를 선별해 기업지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방침으로, 4월 중에 공익관세사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수 공익관세사는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포상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한편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 애로 해결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등 3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전국 30개 세관에 있는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FTA 상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 뉴스]

▶ 뉴질랜드시장은 중소기업에 기회의 땅!

올 3월 23일 한·뉴질랜드 FTA가 정식 서명을 마치고 공식 발효를 앞두고 양국 기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KOTRA는 3월 23일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현지 반응과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기계류, 철강, 건설, 식품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망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은 평균 5%, 최대 10%의 관세율 인하에 힘입어 대표적인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특히 브레이크 패드와 시동용 배터리 등은 중국산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어 관세인하 혜택을 기대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세제류의 원료인 유기계면활성제, 식품 포장재 PVC랩 등 우리 제품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청정 농축산물 생산국으로 식품산업이 크게 발달한 만큼 식품 제조와 포장에 필요한 한국산 기자재와 소재의 수요가 더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건설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 진출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배전용 변압기는 기존 FTA 체결국인 인도네시아, 중국 제품이 많이 팔렸지만, 5%의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이민자가 늘면서 아시아 식품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는 추세로, 라면과 같은 식품류에 대한 우리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일본산을 수입하고 있는 뉴질랜드 바이어의 절반가량이 한국산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KOTRA 오클랜드무역관이 현지 바이어 1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바이어의 48%가 "한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산으로의 수입선 전환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88%가 이번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청정 뉴질랜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까다로운 위생기준, 주 소비층인 중산층 이상 백인의 취향에 맞춘 상품 개발, 포장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KOTRA 양은영 통상지원총괄팀장은 "뉴질랜드는 까다로운 다품종 소량 주문에 대응해야 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FTA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뉴질랜드시장을 새롭게 인식하고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EO 뉴스]

▶ **46개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받는다**

수출입과정에서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받는 성실무역업체(AEO)의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46개 중소 수출업체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월 28일까지 전국에서 62개 중소 수출업체가 신청한 올해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동금속공업(주) 등 46개 중소 수출업체를 선정했다고 3월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공인에 필요한 상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이 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AEO진흥협회·컨설팅기관과 4월 중 협약을 맺은 후 내년까지 AEO 공인을 획득해야 한다.

한편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으면 우리나라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고,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관연락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외 이미지가 좋아져 거래선 신규 발굴이나 유지 등에 유리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위험관리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사업 신청업체 중에서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상담을 시행해 내년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품목분류 】

▶ 폐기물 계란을 식품 원료로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농협의 한 달걀 가공공장에서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할 폐기물을 식품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TV에 방영됐다.

『농협이 운영하는 계란 가공공장에서 폐수처리장으로나 가야 할 계란 찌꺼기가 먹을거리로 둔갑해 대기업 등에 납품했습니다. 제보자는 "기계 작업하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오만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폐기물이라고 써놨잖아요."라고 주장하면서 "계란을 파쇄하면서 나오는 그 계란 국물을 통에 모아놨다가 수증펌프로 빨아서 지금 정상 제품 나오는 데에다가 섞는 거예요."라고 증언했다. 이 폐기물은 공장 밖으로 옮겨지고, 계란 껍데기에 남아있던 액체를 제거한 뒤 잘게 부수는 '난각 처리기'로 들어갑니다. 관련 전문가는 "이거야말로 진짜 산업폐기물이야. 폐기물을 자기들이 임의로 가공해서 여기에다 다시 제품화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어서 방송에서는 관련 식품회사에서는 이러한 폐기물 계란으로 만든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과 신의를 앞세워야 할 농협 관련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하루빨리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사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세율표에서는 위와 같은 식품가공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에 분류되고, 제23류 중 제2301호 "육·설육(脣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에 분류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특정 물품(예 : 포도주의 찌꺼기·조주석·오일 케이크)도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301호 해설서에서는 "(1) 분과 조상 : 골·각·패각 등을 제외한 전 동물[가금류·해서포유동물·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을 포함] 또는 동물성 생산품을 가공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